

법령 코너

□ 전기용품안전기준 기정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

- 개정사항 :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(안전기준) [별표 1] 내지 [별표 3]
- 주요 개정내용
 -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(IEC 및 KS C IEC 규격번호)을 명기
 - K 60065 등 143개 안전기준(참조규격에 KS C IEC가 명기된 기준)은 KS규격과 부합태(영어 통일 및 자구 수정)
- 개정고시 : 붙임참조
 - ※ 별지 및 안전기준 전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ats.go.kr)를 참고하시거나 제품안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람

기술표준원고시 제2002 - 1280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02. 10. 12.

기술표준원장

□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안전기준) 안전기준 [별표 1] 내지 [별표 3]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(별지 기재 생략)

□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다.

